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부터의 교훈: 미국의 거주지 제한정책을 중심으로

What People Learn from Sex Offender Management Legislation and Policy:
Focusing on Residence Restriction Laws of the US

윤 가 현¹⁾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초록: 대다수 문화권에서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부각될 때마다 강경한 정책들을 마련하면서 대처해왔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등록시키고, 그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고, 그들의 행방이나 위치를 추적하고, 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인 방안들이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최근 미국의 여러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주지 제한정책을 중심으로 그 정책의 이론적 근거 및 현황, 그리고 기대하는 방향과 달리 현실적으로 드러난 문제점 등을 고찰하면서 성폭력 범죄발생의 근절이나 억제에 필요한 방안 마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거주지 제한보다도 출소 전후로 성범죄자들의 인지적 왜곡 등을 감소시켜 주는 치료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역사회에서의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동기 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를 강조했다.

주요어: 강간, 거주지 제한, 성범죄, 성범죄 상습성, 성범죄자, 성폭력

Abstract: Whenever sex crimes have become social issues, more powerful strategies have been made to cope the crimes in most societies. Exemplar strategies are laws on registered sexual offenders, community notification, GPS tracking and monitoring, residence restrictions, and so on. Theoretical backgrounds, current status, an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 law which enacted in the US were reviewed. Also several considerations were suggested in order to eradicate sex crimes. The considerations were: sex offenders should correct cognitive distortions through treatment programs as well as be accepted by community in order to prevent sex offense recidivism rather than residence restrictions; more appropriate measures which prevent child abuse should be drawn up from a long-term perspective of eradicating sex crimes.

Key Words: Rape, Residence Restriction, Sexual Aggression, Sex Offender, Sex Offense Recidivism

1) 교신: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33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윤가현 (ghyoun@jnu.ac.kr)

서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는 과거로부터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근거로 인간의 가치를 정립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 이후에야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성폭력의 형태 중에서도 연쇄강간 또는 유괴나 살해 등과 연결된 강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거의 항상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이 논란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선진문화권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성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그들을 사후 관리하는 방안들이 그 예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출소 후 성범죄 재발방지에 맞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문화권보다 더 먼저 성범죄 방지에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성범죄 관련 정책들의 효과를 개관하면서 성범죄 예방에 관한 정책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그 논지의 초점은 특히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강경해지기 시작하면서 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정책, 즉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또 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책(residence restrictions)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했을 때를 가정하여 재범발생의 억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이를 역으로 표현하면, 지역사회주민들이 출소한 성범죄자들로부터 입는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근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에 의하면, 별다른 경험적 자료 없이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나 거주지 제한 등의 정책들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보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더 강경한 정책이 있어야 성범죄의 발생을 억제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Butt, 2014; Kus, 2014; Socia,

2013), 본고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의 효과성 여부를 토대로 성범죄의 초범이나 재범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으며, 본고의 논의는 남성이 성범죄의 가해자이고 또 여성이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 국한시켜 전개시켰다.

성폭력 관련 법안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은 이미 193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37년 Michigan주에서 성범죄자들을 정신병질자로 여기는 법안(sexual psychopath law)이 통과된 이후 New York주와 Florida주에서도 통과되었으며, 1955년까지 26개 주에서 시행되었다.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자를 정신병동에 수용시키던 방안이 투옥시켜서 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또 초기에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에 관한 목록은 그들을 관리, 추적하는 법 집행 관계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고, 일반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다(Snow, Kikuch, & Kissner, 2015).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꾸준히 모색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방안들이 등장하는 등 더 엄격해지고 있다(Mustaine, 2014). 미국 연방정부에서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에 제정된 법안은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① 출소 후 성범죄자들의 신상이나 주거지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시키는 법, ②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법, 그리고 ③ 출소 후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시키는 법이다(Snow 등, 2015). 그 기간 동안 성범죄 관련 법안들이 더 엄격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 및 주요 법안을 법안이 통과된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법안이 있다.

윌링법. 미국 연방정부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1994년도에 제정되었던 연방정부 법안

(Federal Violent Crime Control & Law Enforcement Act)의 일부로 웨털링법(Jacob Wetterling Act; Jacob Wetterling Crimes Against Children & Sexually Violent Offender Registration Act)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1989년도에 발생한 웨털링(Wetterling)²⁾ 유괴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는데,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반 범죄 및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투옥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주 정부차원에서 그들의 거주지 등의 정보를 10년까지 등록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Kus, 2014; Nobles, Levenson, & Youstin, 2012; Pope, 2008; Snow 등, 2015).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면 등록시키는 법안은 이미 California주에서 1947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었지만, 웨털링 유괴사건을 계기로 1994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성범죄자들을 등록시키도록 하는 정책으로 강경하게 바뀐 것이다. 즉 모든 주들은 연방정부의 웨털링법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주 정부 차원이든, 지방정부 차원이든 성범죄자들을 등록시키도록 했다. 역시 연방정부는 1997년도에 웨털링법을 더 강화시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주소, 직장생활, 학교등록 상황 등의 정보까지 알 수 있도록 했다(Burchfield, Sample, & Lytle, 2014; Mustaine, 2014; Pope, 2008).

미건법. 미건(Megan Kanka)³⁾이라는 7세 여

2) 1989년 10월 22일 Minnesota주 St. Joseph시에서 11세 소년 Jacob Wetterling은 남동생, 친구와 같이 동네 가게에서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던 중 충을 든 복면의 한 남성에게 붙잡혔다. 그 남성은 두 남아를 숲 쪽으로 걸어가도록 요구한 뒤 Jacob만을 데리고 사라졌는데, 그 뒤 Jacob은 돌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의 상태가 되었다. Jacob이 사라지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나중에 경찰의 수색과정에서 그 지역에 교도소 출소자들의 사회복귀훈련시설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성범죄자들이 가석방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3) 1994년 7월 29일 New Jersey주 Hamilton읍에서 7세 여아 Megan Kanka가 집에서 이웃주민에게 납치되었다. 납치범 Jesse Timmendequas은 새 강

아가 1994년 이웃주민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96년 미건법(Megan's Law)이 제정되었다. 미건법은 웨털링법을 보완하여 모든 주에서 성범죄자들의 등록사항을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이사를 올 경우 그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것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면 공공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미건법에서는 범죄자들을 위험수준에 따라서 세 유형으로 범주화했으며, 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모두 거주민에게 고지하며, 중간 수준은 학교나 탁아시설 등에 고지하며, 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에 대한 고지는 의무적이지 않았다(Butts, 2014; Kus, 2014; Mustaine, 2014; Nobles 등, 2012; Pope, 2008; Snow 등, 2015).

웨털링법과 미건법이 통과된 이래 2000년대 초반에는 이미 50개주 모두 성범죄자들을 등록시킨 후 지역사회주민들에게 그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Florida주는 1997년 10월 14일부터 웹사이트에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실시한 최초의 주인데, 신상공개에 관련된 서비스를 전화로 매일 24시간 동안 제공하기도 한다. 즉 지역사회 주민이 무료직통전화(1-800-FL-PREDATOR)로 전화를 하면, 보안관사무실에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또 2000년에는 성범죄자들이 대학에 다닐 경우 거주지 주소 등을 알리도록 했고, 2003년에는 대중이 온라인에서 등록된 성범죄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성범죄자들의 등록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 접근이 가능한 정보는 이름, 사진, 범죄 관련 정보, 현재 거주지 주소, 흉악범으로 분류되었는지의 여부 등이다. 여러 주들이 그 외의 부수적인 정책을 통과시켰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형량을 늘리

아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Megan을 그의 집으로 오도록 유혹했다. 그는 Megan을 강간하고 비밀을 유지할 목적으로 살해를 했으며, Megan의 시신을 상대로 강간하고 시신을 공원에 버렸다. 그는 이미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을 한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자였다.

는 것, 민사적 감금제재(수용치료 사법처분 제도, civil commitment;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와 유사한 제도임), 취업 제한, 거주지 제한 등이다(Burchfield 등, 2014; Mustaine, 2014; Pope, 2008). 이들에 대한 설명은 곧이어 소개되는 다른 법안에서 다룬다.

팸라이크너법.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라이크너(Pam Lychner; 1958-1996)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 찾아왔던 자가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한 후에 피해자 인권운동을 전개하면서 성범죄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도록 하는 법률제정을 청원했다. 그 결과로 1996년에 제정된 법안이 팸라이크너법(Pam Lychner Sex Offender Tracking and Identification Act)이다. 이 법에 따라 사법기관은 성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데, 상습적인 범행이나 흉악범일 경우 출소 이후로부터 평생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시키며, FBI에서도 의무적으로 추적, 관리하게 되었다(Mustaine, 2014; Snow 등, 2015).

제시카법. 2005년 Florida주에서 발생한 제시카(Jessica Lunsford)⁴⁾의 유괴, 강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사건이 발생했던 그 해에 곧바로 제정

4) 2005년 2월 23일 밤 9세 여아인 Jessica Lunsford(1995년 10월생)가 Florida주 소도시 Homosassa의 자기 집에서 가족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유괴되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Jessica의 집에서 몇 마일 정도 거리에 사는 등록된 성범죄자 John E. Couey가 Jessica의 집에서 보이는 이복누이의 이동주택에 머물렀음을 알게 되었다. Couey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적어도 한 차례 중형을 선고받았던 자였다. Couey는 3월 17일 경찰의 심문을 받기 시작하여 18일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Jessica를 유괴하여 강간한 후 2월 27일 생매장했음을 실토했으며, 경찰은 3월 19일 그녀의 시신을 집 근처 묘지 뜰에서 찾아냈다. Couey는 2007년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수감생활 도중 2009년 9월 암으로 사망했다.

된 Florida주 법안의 비공식적인 명칭은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Law)이다. 이는 미국국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차원의 법안이 아니었지만, Florida주 법안을 모델로 2005년 California주를 비롯한 40개 이상의 주에서 제시카법 내용을 통과시켰다. 제시카법의 주요 내용은 아동 상대의 범죄에 대한 의무적인 최소형량을 늘림과 동시에 출소한 이후에도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등 아동이 밀집하는 장소부터 일정한 거리 밖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제시카법에 의해 제한하는 거주지의 최소거리는 1,000-2,500피트(feet)였는데, 이로 인하여 출소 후 성범죄자들이 도심지역에서 거주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역시 이 법안에 의하면, 심리적 요소가 추가되어 치료를 받도록 하며, 역시 등록된 성범죄자들은 위성추적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부착하고 다녀야 하므로 부적절한 장소에 출몰하면 곧바로 알려지게 된다(Butts, 2014; Kus, 2014; Snow 등, 2015).

월시법. 1981년도에 발생한 월시(Adam Walsh)⁵⁾ 유괴사건을 계기로 2006년 7월 27일 연방정부는 월시법(Adam Walsh Act: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했다. 월시법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고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것에 관한 개정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범주를 확대시키다보니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등록

5) 1981년 7월 27일 6세인 Adam Walsh는 엄마를 따라 Florida주 Hollywood시의 Sears 백화점에 갔다. 아이는 엄마가 쇼핑 도중 장난감 가게에 있는 전시용 비디오 게임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몇 분후 장난감 가게로 왔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유괴된 지 16일 후 그의 절단된 머리는 120일 마일 정도 떨어진 운하에서 발견되었으나 몸통은 찾아내지 못했다. Ottis Toole은 다른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투옥된 상태에서 1996년 9월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Walsh의 살해를 시인하고 부정하기를 반복했다. Hollywood시 경찰은 2008년 12월 범인이 Toole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해야 하는 범죄자의 수가 늘어났고, 등록해야 하는 기간도 연장되었고, 등록해야 하는 정보도 거주지나 직장 등까지 확대됨과 동시에 변경될 때마다 알려야 했고, 그리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었는데, 다른 유형의 강력범죄에도 영향을 주었다(Burchfield 등, 2014). 연방정부도 주 정부에 개정된 법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의 비율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서 이행을 촉구했다. California 주 등 대다수 주에서 개정된 법안을 이행했지만,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이행하려면 경비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법안의 효과 등이 보장되지 않아서 이행하기가 어려웠다(Snow 등, 2015).

첼시법. 이는 2010년도에 강간을 당한 이후 살해된 첼시(Chelsea King)⁶⁾사건의 발생을 계기로 곧바로 California주에서 제정한 법안이다. 첼시법(Chelsea's Law)은 성범죄자들의 출소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위성장치 등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첼시를 강간, 살해한 가해자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는 가석방 등이 없는 상태의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6) 17세의 Chelsea King은 2010년 2월 25일 California주 Poway시의 Rancho Bernardo Community Park에 달리기 운동을 하러 갔다. 이는 그녀의 일상생활의 일부였기에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그날 귀가하지 않았다. 철저한 수색에 의해 등록된 성범죄자인 John Gardner III의 DNA와 일치하는 증거를 찾았는데, Gardner는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2009년 12월에도 공원에서 발생한 범죄의 용의자였기에 강간 및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2010년 3월 2일 호수의 고립지역에서 발견된 한 시신이 그녀로 확인되었으며, 며칠 후에 Gardner 소행으로 확인된 다른 시신도 발견되었다. 그는 Chelsea를 강간 후 살해했음을 2010년 4월 16일 시인했다(Kus, 2014).

법안은 2010년 4월 제정에 동의 및 동년 9월에 California주의 Arnold Schwarzenegger지사가 서명했다.

법안 제정의 사회적 배경

국민의 법 감정

어린이 유괴나 성범죄에 관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대중매체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매체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은 주로 범죄자의 상습성이나 충동성 등 위험한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인들은 그와 같은 소식에 노출되면 될수록 낯선 자를 더 위협스러운 사람으로 지각함과 동시에 두려움이나 거부감, 분노, 충격 등이 증가하게 되는데, 성범죄자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들보다 더 두렵고 혐오스러운 대상, 불신이나 경멸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또 역설적이지만 대중매체에서 그 사건들이 자주 언급되면 될수록 강력 범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설령 비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매체에서의 빈번한 언급은 두려움을 더 확신시켜주는 영향도 나타난다(Burchfield 등, 2014; Mustaine, 2014; Pope, 2008; Singleton, 2006; Snow 등, 2015; Socia, 2015; Tewksbury, 2014).

성범죄사건에 관한 대중매체의 집중적인 보도로 인한 일반인들의 두려움이나 충격 등의 도덕적 공황상태(moral panics)를 완화시키는 방안은 바로 범죄자 처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일인데, 그러한 일은 거의 반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Burchfield 등, 2014). 성범죄 및 성범죄자들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에 활발해진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의해 정책 입안자들은 보다 더 강력하게 성범죄를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Tewksbury, 2014).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때문인지,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법안을 강화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편이다(Huebner 등, 2014; Snow 등, 2015).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정책들을 이행할 때에는 항상 막대한 경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

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의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동을 상대했던 범죄자가 출소한 후 신상정보를 등록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94%가 찬성했다(Snow 등, 2015). 일반인들은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등록시키고 그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면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재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Florida주의 조사에서도 76.3%가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해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으며, 응답자 68%가 등록과 고지가 재범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믿고 있으며, 또 미국 전역에서의 응답비율도 그와 유사했다(Levenson, Brannon, Fortney, & Barker, 2007).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등록시키고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거주지 제한 정책들의 효과가 없다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법안들을 계속 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그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Tewksbury, 2014).

법안의 주요 내용

지난 1990년대 초반 이래 아동을 상대로 한 유괴,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들이 세간의 이목을 끌 때마다 출소한 성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에 대한 책임 및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반응의 대응책으로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법안 등이 제정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안들은 더욱 강경해졌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개발되어 적용된 정책들은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시키는 것(public registration), 등록된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것(community notification), 일정한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전자장치로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electronic monitoring),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수용명령(civil commitment), 거주지 제한(residence restric-

tions) 등이다(Butts, 2014; Mustaine, 2014; Pope, 2008; Socia, 2012b, 2012c; Socia & Stamatel, 2012; Youstin & Nobles, 2009).

일반민들은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하는 범죄자가 이웃에 거주할 때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편이다. 거주지 제한 관련 법안은 피해자 방지 및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심 때문에 제정된 법안이다. 거주지 제한정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법안들이 그 장기적인 효과나 영향, 근본적인 원인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없는 상태에서 제정되었다. 일단 법안이 제정된 이후에는 대중매체나 대중들의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거주지 제한정책은 등록된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역사회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그리고 가장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공공정책에 해당된다(Burchfield 등, 2014; Pope, 2008; Singleton, 2006; Snow 등, 2015).

거주지 제한정책의 기본 배경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도 다른 법안들처럼 성범죄의 상습성을 감소시켜보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법안제정의 취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을 낮추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별다른 저항 없이 거주지 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성범죄 피해자 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함이다. 또 거주지 제한정책은 성범죄자의 거주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하므로 출소한 후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아동들이 모일 수 있는 특정한 장소(학교, 데이케어센터, 공원, 놀이터 등)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했다. 곧 아동이 밀집하는 장소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실행은 성범죄자들이 잠재적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해야 그들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

(Huebner 등, 2014; Levenson & Hern, 2007; Nobles 등, 2012; Socia, 2012a, 2012b, 2012c, 2013; Youstin & Nobles, 2009).

그러나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배경은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편견 또는 오해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오해 또는 성범죄자들은 대부분 낮은 사람이라는 편견 등이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1970년대나 80년대 심리치료 연구들은 대부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던 반면, 근래에 실시된 연구들은 인지행동치료에 의해서 재범 비율이 거의 40%정도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Levenson & Hern, 2007).

역시 거주지 제한정책의 배경에는 모든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서 실시된 재범에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습성 또는 재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었다. 즉 2003년도의 미국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3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하고 출소한 자들이 재범으로 다시 체포된 성범죄자는 5.3%이었다. 또 캐나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14%가 재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아동을 상대로 한 자들의 13% 및 강간범의 20%에 해당되었다. 물론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어도 체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실제 재범 비율보다 더 낮은 수치일 수 있다(Levenson & Hern, 2007).

실제로 성범죄자들의 출소 후 재범 비율은 다른 범죄들과 비교할 때 더 낮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범 등은 출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이후 5년 이내에 저지르는 재범 비율은 10-20% 정도이다. 재범의 가능성은 여러 맥락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 재범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변태적이거나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기호를 보이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 출신에다가 지적수준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Kus, 2014; Snow

등, 2014). 상습성 관련 성범죄 연구 82편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전형적인 성범죄 재범 비율은 출소 후 5년 정도 지날 무렵 10-15%에 해당되었다(Hanson & Morton-Bourgon, 2005).

일상적 행동이론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거주 장소에 따라서 그들의 재범 가능성이 달라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 둘의 가상적인 관계를 지지하는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바로 거주지 제한정책의 법제화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일상적 행동이론(RAT: routine activities theory)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성범죄자가 잠재적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면 상습성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Huebner 등, 2014; Mustaine, 2014; Nobles 등, 2012; Socia, 2012a).

Cohen과 Felson(1979)의 RAT접근방법에 의하면, 범죄의 발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조건은 ① 동기화된 범죄자의 존재, ②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③ 범죄행위를 예방해줄 수 있는 자들의 부재라는 세 가지이다. 곧 RAT에서는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목표대상에 접근하지 않으면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자(교사, 부모, 이웃 등)가 없더라도 범죄 발생의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Mustaine, 2014). RAT의 조건 ②에 의하면, 대다수 범죄가 범죄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며 거주지로부터 멀어질수록 범죄 위험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Huebner 등, 2014; Rengert, Piquero, & Jones, 1999). 다른 연구자들도 범죄 관련 의사결정과 지리적 위치의 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는데, 예를 들면,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을 범한 자들은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목표를 찾았다고 설명한다(Nobles 등, 2012).

RAT의 조건 ③에 의해서도 법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정이나 보호관찰 직원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다면, 출소한 성범죄자들도 그러한 제한정책을 준수할 것이라고 가정한다(Mustaine, 2014). 효과 여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

역사회마다 성범죄자의 행동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공식적인 통제는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사법이나 행정기관에 등록시키면서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려는 차원이며, 비공식적인(informal) 통제는 주민의 의한 감시 등의 사회통제(social control)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제나 비공식적인 통제나 이웃마다 다른 조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범죄자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나 경찰서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하다는 뜻이다. 곧 성범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회통제가 공공 안전을 증진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범죄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정도가 주민마다 다를 수 있다(Socia & Stamatel, 2012).

RAT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공공안녕을 유지하려는 경찰과 거주민들의 공식 및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 능력이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기회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 범죄자가 거주할 경우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예 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게 해버릴 수도 있다. 지역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도 다양한데, 그 대표적인 것들은 바로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방법(informal surveillance), 위험한 지역을 회피하면서 생활하는 방법, 범죄자의 특이하거나 용납될 수 없는 행동들에 개입하면서 통제하는 방법 등이다.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은 이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방법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균일하게 지역사회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이웃에 살고 있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면 그 범죄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그 지역을 피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행위에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Socia & Stamatel, 2012).

기타 이론

거주지 제한정책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다른 이론적 대안은 일반 억제이론(general deterrence theory)이나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다(Socia, 2012a). 일반 억제이론에 의하면, 범죄자에 대한 체포, 기소, 처벌의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범죄율이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범죄자가 범죄를 행한 이후에 얻는 이득과 받는 처벌의 고통의 비교에서 이익이 고통보다 크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고통이 이익보다 크면 발생이 억제된다고도 설명한다. 이 이론에서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처벌이나 위협이 성범죄 의도를 단념시킨다고 본다(Levenson & Hern, 2007; Socia, 2012b). 또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범죄자는 범죄행위를 했을 때 적발될 가능성, 처벌의 종류나 내용 등을 토대로 범죄행위의 시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Socia, 2012a).

이러한 이론들이 타당하다면, 모든 잠재적 범죄자(초범자 포함)들이 거주지 제한정책을 처벌의 강도가 심하다고 지각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체포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각해야 한다. 잠재적 범죄자들은 처벌이 심할 것이라고 지각할 때 범죄행위의 의사결정에 변화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거주지 제한정책을 도입한 지역에서의 성범죄 비율이 감소해야 한다(Socia, 2012a).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잠재적 범죄자는 거주지 제한 이외에도 전자장치에 의한 위치 추적, 신상의 등록 및 지역사회 고지, 감금, 대중적 수치 등 범죄인 인한 다양한 결과를 더 생각하게 된다. 곧 거주지 제한정책을 도입하면 잠재적 범죄자에게 억제효과가 나타나서 초범 성범죄 비율도 낮아져야 하고, 역시 등록된 성범죄자들에게도 처벌의 위협이 되어 억제효과를 가져다주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것은 아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들에게 억제효과가 있으며, 거주지 제한정책도 유사한 억제효과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정책을 도입할 때 대중들의 신고 등 인식과 경각심을 높여주며,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보호적 조치를 증가시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Levenson & Hern, 2007; Socia, 2012b).

거주지 제한정책의 실시 현황

영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등록된 미국 내 성

범죄자는 2012년도 1월 통계에 의할 때 747,048명인데, 그 중 73,000명 정도가 California주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의 거주지를 학교, 운동장, 탁아시설, 공원, 학교버스 정류장 등 아동들이 빈번하게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는 제한하고 있는 정책은 미국의 여러 주 및 시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거주지 제한정책은 주마다 보편화되었지만, 지역마다 제한하는 범위가 다르다. 어떤 지역에서는 성범죄자들 중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자에게만 그와 같은 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모든 등록된 성범죄자들에게 적용시키기도 한다. 또 아동이 밀집하는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이내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도시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를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Levenson & Hern, 2007; Mustaine, 2014; Nobles 등, 2012; Socia, 2012b; Tewksbury, 2014; Youstin & Nobles, 2009).

정책의 유행

거주지 제한정책은 효용성의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유행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거주지 제한정책의 실시는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연쇄적으로 법제화를 모방하거나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등 도미노(domino)효과를 유발했는데, 그 이유는 옆의 지역에서 법제화를 시도할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지역이 등록된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와 같은 유행에 의해 주정부 차원의 거주지 제한정책 유무에 상관없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제정하게 되었다(Socia, 2012a, 2012b).

주정부 차원에서는 1995년도에 Delaware, Michigan, Florida주를 비롯하여 Missouri주에서 거주지 제한정책을 시도하기 시작하여 2004년까지 15개 주, 2008년 30개 주, 2013년 현재 33개 주가 실시하고 있는데, 1995년 1월 등록법안

을 통과시킨 Missouri주는 모든 성범죄자들의 등록기간을 평생으로 하면서 등록정보의 변화 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2005년 Florida주에서 발생한 제시카(Jessica Lunsford)의 유괴, 강간, 살해 사건이 매체에 전달되면서 다른 주, 군, 소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주면서 유행했는데, Florida주의 Miami Beach가 거의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거주지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New York주에서는 Tioga군의 Candor 그리고 Cayuga군 전체지역에서 2005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Huebner 등, 2014; Levenson & Hern, 2007; Nobles 등, 2012; Socia, 2012a, 2012b, 2012c; Youstin & Nobles, 2009).

제한 거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주지를 제한하는 거리는 아동들이 밀집하는 장소들로부터 전형적으로 최소 500피트(feet) 이상이지만, 2,500피트 이상으로 규정한 지역도 있다. 즉, 33개 주에서 정해진 거주지 제한정책의 거리는 13개 주가 1,000-1,999피트 사이인데, Michigan주나 Missouri주가 여기에 속하며, 7개 주는 500-999피트, 6개 주는 2,000피트로 Iowa주가 여기에 해당되며, 그리고 7개 주는 사법기관에서 거리를 피해자와 가해자 특성 등에 따라서 즉석에서 정해준다. Michigan주는 2005년 10월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때 아동밀집지역 및 중고등학교 근처로부터 1,000피트 이상 떨어져 살아야 하고, 500피트 안에서는 직장도 구하지 않아야 하고, 또 배회도 하지 않아야 한다(Huebner 등, 2014; Levenson & Hern, 2007; Nobles 등, 2012; Youstin & Nobles, 2009).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San Francisco시의 제한거리는 2,000피트이며, Florida주는 1,000피트임에도 Jacksonville시는 2,500피트로 확대시켰으며, New York주는 거주지 제한 범위가 지역에 따라서 500피트에서 2,000피트사이로 다양하다(Butts, 2014; Noble 등, 2012; Socia, 2012b).

거주지 제한정책의 효과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이상 성범죄자의 상습성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고지, 전자추적 장치의 부착, 민사적 감금제도, 거주지 제한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주지 제한정책은 아동을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살면 어린이들이 희생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논리, 즉 출소한 범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잠재적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면 재범의 기회가 감소된다는 기대에서 실시되고 있다(Snow 등, 2015; Socia, 2013; Tewksbury, 2014). 거주지 제한으로 성범죄자들이 모여서 사는 것 자체가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그들이 서로 가깝게 산다는 것은 서로에게 지지가 될 뿐만 아니라 비행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도 법 집행(감시)이 더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또 알게 모르게 공식적 및 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더 잘 이루어진다면 상습 범죄 비율을 낮추고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안전성을 높여줄 수 있다(Casady, 2009; Socia, 2012a).

그러나 그와 같은 이론적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가? 그 효과 여부를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거주지 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 다른 하나는 거주지 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지 제한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사는 성범죄자와 가깝게 살고 있는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역시 그 효과를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과 가해자의 상습성 여부에 따른 형태도 비교해보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재범 및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초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Socia 2012b).

거주지 제한정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일부 연구는 그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한다. 예를

들면, Missouri주에서는 성범죄가 다른 범죄보다 약간 더 낮게 나타났거나(Mustaine, 2014), 거주지를 제한하는 지역 이내에서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만이 약간 감소했다거나(Huebner 등, 2014), 거주지 제한 정책이 전반적인 범죄 예방 정책이라기보다도 단순히 이미 발생했던 성범죄들을 신고하거나 발견한 수준에서 유용했다는 정도 등이었다(Socia, 2013). 그러나 거주지 제한정책의 기본 목적은 재범의 방지인데, 그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대다수 연구들은 그 미흡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Michigan주의 보고에 의하면, 거주지를 제한한 지역에서의 성범죄 상습성을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오히려 약간 더 증가했다(Mustaine, 2014). New York주 52개 모든 군(county)에서 199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체포된 성범죄 비율과 거주지 제한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재범 비율에서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며, 아동 대상 성범죄의 초범이나 재범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었지만, 오직 성인 대상 성범죄 초범 비율이 약간 낮아지는 효과에 불과했다(Socia, 2012a; 2012b). Minnesota주도 1990년에서 2006년 사이의 범죄 기록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성범죄자의 상습성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거주제한거리를 1,000피트에서 2005년 8월 2,000피트로 확대했던 Iowa주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 전과 후의 상습성을 비교한 결과 감소의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했다(Duwe, Donnay, & Tewksbury, 2008; Levenson & Hern, 2007; Noble 등, 2012; Socia, 2012b, 2013). Colorado주의 경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과 초범을 비교할 때 거주지 제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났다(Levenson & Hern, 2007). Florida주는 1995년 제한 거리를 1,000피트로 정했다가 2004년에는 가석방된 성범죄자들에게는 학교버스 승강장까지 추가했으며, Jacksonville시는 2005년 7월 2,500피트로 거주제한지역을 확대시켰지만, 확대 실시의 전후로 성범죄 발생의 비율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었다(Mustaine, 2014; Noble 등, 2012).

전반적으로 거주지 제한정책이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재발 방지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증거는 거의 없다.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범죄자나 1,000피트나 2,500피트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이나 재범의 차이가 없었으며, 거리와 의미 있는 상관도 없었으며, 재범과 초범의 차이도 없었다(Huebner 등, 2014; Zandenbergen, Levenson, & Hart, 2010). 여러 연구자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정책으로 인하여 성범죄자 및 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Kus, 2014; Socia, 2015). 예를 들면, 아동들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범죄자들도 동일하게 거주 제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각종 서비스 접근 등의 제한으로 스트레스가 심했으며(Levenson, 2008), 대부분의 성범죄는 등록된 자들에 의한 재범보다도 초범에 의한 것이 더 빈번했다(Kus, 2014; Mustaine,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 정부 차원의 법률 조항을 무관하게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거주 제한정책을 시도하고 있다(Nobles 등, 2012).

거주지 제한정책의 의문사항

여러 지역에서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지지해주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곧 거주지 제한 정책은 매우 불확실한 근거에 의해 입안된 탓에 성범죄 재발 방지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거주지 제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은 다양하며, 이들을 몇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씩 점검해본다.

거주지 제한정책의 대상

출소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정책은 전반적인 성범죄 발생을 억제시키려는 전략이라기보다도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감소시키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무관한 자들까지 거주지 제한정책의 대상

으로 규제하고 있다. 곧 출소 후 신상정보를 등록시키는 대상의 성범죄 범위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정책의 본연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범죄자마다 재범의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 제한 등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아동 상대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지 않은 범죄자들이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거주지 제한정책은 아동에 대한 위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4세 여아를 성적으로 유린한 60대 남성 범죄자와 16세 여자 친구를 강간한 18세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전자는 아동에게 위험한 자이지만, 후자는 다르다. 역시 거주지 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마다 등록해야 할 범죄의 범위가 지역사회에 고지해주는 정보의 범위가 균일하지가 않다. 또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의 성행위라도 피해자의 연령 때문에 범죄가 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강간 일지라도 법률로 정한 미성년자의 연령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지역에서는 등록이나 고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Kus, 2014; Mustaine, 2014; Pope, 2008; Socia, 2012b; Tewksbury, 2014).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거주지 제한정책의 찬성론자들은 출소한 성범죄자가 아동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어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지만, 그러한 기본 전제 자체가 거주지 제한정책의 결점이다. 일상 활동이론에 의한 범죄발생의 설명은 여러 범죄에서 경험적으로 타당하다고 증명되었지만, 성범죄나 성범죄자들의 설명에는 유용하지 못하다. 즉, 성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 어린이 밀집지역에 접근하거나 배회하면서 유혹이나 강압 등을 이용하여 아동을 상대할 것이라는 가정이 잘못이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모이는 학교나 공원 근처에 자주 나타나서 피해자를 찾는 성범죄자들은 많지 않다. 또 범죄자는 자동차를 몰

고 다니므로 범죄가 발생한 곳에서 멀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다. 거주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위협이 된다면, 거주가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도 위협이 된다. 아동 상대 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은 아동 밀집지역을 어슬렁거리는 낯선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주지 제한지역이 아닌 곳에서 피해 아동과 서로 아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곧 가해자의 상당수는 가족이나 친척에 해당된다. 거주지 제한의 논리는 아동이 생활하는 장소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사는 집은 학교나 공원 바로 옆이 아니다. 그런 밀집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더라도 아동의 주거지는 범죄자와 가까운 곳이 되기도 한다. 또 범죄자들은 거주지 허용된 자신의 거주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을 자기 집으로 유혹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등록된 범죄자와 잠재적 피해자인 아동과의 공간적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 어린이 밀집 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주지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Butts, 2014; Duwe 등, 2008; Huebner 등, 2014; Kus, 2014; Levenson & Hern, 2007; Mustaine, 2014; Nobles 등, 2012; Snow 등, 2015; Socia, 2012b; Tewksbury, 2014; Zandbergen 등, 2010).

주거의 불안정

출소 후 성범죄자들이 주거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거주지 제한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출소 후 성범죄자들이 흩어져 살기를 바라는데, 이론적으로 소규모 지역마다 거주지 제한정책을 실시할 경우 등록된 범죄자들이 시골지역 등을 찾아가므로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거주 불안정 등으로 법규의 의무적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거주지 제한정책으로 특정한 지역에 범죄자들이 몰려서 살게 되거나 범죄자들이 갈 곳이 없도록 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자신들

의 거주 지역에서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 성범죄자들이 제한을 받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이주해 다니다가 결국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된다. 또 성범죄자는 출소 후 자신이 살았던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거주지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을 찾다보니 도심이 아니라 시골지역 등 특정한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 성범죄자 주변에 다른 범죄자들이 특정한 지역에 가깝게 모여서 살게 된다. 그들이 흩어져 살지 않고 모여 살게 되면, 재범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Socia, 2012a, 2012b).

예를 들면, 시골지역은 대부분 학교들이 넓게 흩어져 있는데, Iowa주에서는 소단위 지역마다 정책을 실행하다보니 성범죄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심지어 Florida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에게 성범죄자들을 세입자로 받지 못하도록 규제해버려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도 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범죄자는 가족이 규제지역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된다. 결국 거주지 제한구역이 아닌 곳으로 범죄자들이 몰려서 살게 되는 문제, 아니면 아예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고 위반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Levenson & Hern, 2007).

또 San Francisco와 같은 도시에서는 아동들이 밀집하는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거주제한 거리가 2,000피트이다 보니 도시의 규모나 인구 밀도 상 시골지역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정책에 의해 거주지가 없는 주거부정 상태의 성범죄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Butts, 2014). 시카고 지역을 34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조사에 의하면, 구역 당 등록된 성범죄자가 평균 8명 정도였는데, 등록된 성범죄자가 없는 구역은 4%, 20명 이상의 등록자가 있는 구역이 6%에 가까웠다. 또 등록된 범죄자들의 30%는 학교나 공원, 주간보호 탁아시설 등과 일정한 거리 이내의 금지된 지역,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Socia & Stamatel, 2012).

거주지 제한정책의 공간적 분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효과를 살핀 연구에 의하면,

거주지 제한정책이 강경할 때 성범죄자들이 흩어져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주 제한구역 이내로 들어와서 사는 범죄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아동 청소년 보호효과가 없어졌다(Youstin & Nobles, 2009). 거주지 제한 지역을 피해서 살던 성범죄자들이 거의 2년 정도가 지나면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하며, 법 집행이나 명령의 준수 등이 시들해진다. 대략 2년 이내는 등록된 범죄자들이 떨어져 사는 등 효과가 있지만, 2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런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초기에는 법의 공평한 집행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거주지로 이주를 원하는 청원을 공무원들이 수용하기 때문이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법 집행을 강력히 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거주지 제한이나 등록 등 정책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독기관 관계자들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한 비율의 범죄자들이 거주지 제한을 위반하게 된다. 실제로 거주지 제한을 위반한 성범죄자 비율이 증가하며, 여러 주에서 거주 제한 범위 이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Huebner 등, 2014; Socia, 2012a).

거주지 제한정책은 이와 같이 의도와 달리 성범죄자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도록 해버린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자, 일부는 옮겨 가서 살려고 해도 집 주인이 세를 주지 않아서 살 곳을 찾지 못한 자들이 생긴다. 우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기가 어려울 경우 사회적으로 해체된 지역으로 몰리는데, 그곳은 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일 수 있다. 그러나 마땅히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한 주거부정 상태(예, 노숙자 생활)의 성범죄자들은 매일 어디서 어떻게 잘 것인지를 걱정해야 하므로 재범방지의 의지력이 높지 않다. 주소를 거짓으로 신고하든지, 숨어서 살든지,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의 경우 그들의 행방을 제대로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들의 주거 불안정은 성범죄의 상승성, 가석방 조건의 위반, 무단이탈과 관련성이 높다(Butts,

2014; Levenson & Hern, 2007; Mustaine, 2014; Nobles 등, 2012; Snow 등, 2015).

서비스 혜택의 제한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책은 성범죄자들에게 각종 서비스가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생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재범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는 점이다. 출소 후 성범죄자들은 거주지 제한으로 거주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주거부정의 상태이거나 구하더라도 시골 지역 등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일거리도 많지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곳이다. 출소 후 신상정보가 일단 등록이 되면 범죄자 및 가족에게는 사회적 오명으로 작용하여 일거리 찾기가 더 어려워지며, 설령 도심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직장까지 왕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역시 정신건강 센터나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도심까지 나가야 하고, 도심으로 나갈 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결국 이와 같은 재정적 및 정서적 스트레스, 안정성 감소, 고립감 증가, 욕구좌절 등의 요인은 재범의 위험, 즉 상승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주 제한지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더 심해지는 것을 여러 주(예, New Jersey, Florida, Indiana 등)의 실태 분석에서 드러났다(Kus, 2014; Levenson & Hern, 2007; Nobles 등, 2012; Socia, 2012b, 2013).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도 거주지 제한이나 등록된 범죄자라는 것 때문에 매일 욕구좌절의 상태에서 살다보니 재범의 욕구가 작지 않음을 지적했다(Mustaine, 2014).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가족이나 자녀들과 영구적으로 멀어져버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Florida주의 2004년도 조사에 의하면, 당시 1,000피트 거리로 거주지를 제한할 때 조사대상자 절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으며, 44%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 또는 가족이 범인과 함께 이주하다보니

가족을 억지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무고한 가족 구성원들까지 심리적, 재정적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해버렸다. 이를 역으로 보면, 성범죄자가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다시 저지르더라도 신고가 쉽지 못하게 한 것이다(Kus, 2014; Levenson & Hern, 2007).

사회통제효과의 불확실

정책을 입안할 당시의 의도와 달리 사회통제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고 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책의 가정은 지역사회주민들이 자신이나 이웃들을 그런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욕망을 공유하면서 지역사회를 수호하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곧 성범죄자들에 관련된 법제화는 공식적인 사회통제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수호하려는 정신을 함양시켜주고 또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고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거주지 제한 등 물리적 공간을 규제하는 법의 내용은 지역사회마다 약간씩 다르다. 어떤 지역은 우편물이나 방문, 전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역사회주민에게 고지하지만, 시카고 등은 소극적인 고지를 하는 지역으로 요청하는 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해주며, 또 소극적 고지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 인터넷 상으로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도 있다.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으로서 거주지 정보 등을 지역사회주민들이 공유하도록 했지만, 시카고 지역에서는 사회통제와 같은 효과는 없었다. 성범죄자가 자신의 이웃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민들의 일부는 강압적으로 범죄자를 쫓아내 버리는 노력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리기도 한다(Butts, 2014; Pope, 2008; Socia, 2013; Socia & Stamatel, 2012).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인 고지를 해주지 않은 이상, 지역사회주민들은 성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그런 정보에 접근하고,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을 잘 모른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의의로 많지 않다. 성범죄자들을 등록시키는 법률의 제정 의도는 주민들에게 범죄자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 위한 것이지만,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공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범죄자의 거주 정보에 접근도 이용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누가 자신의 거주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탐색하지 않으면 정보고지의 효과가 별로 없다. 하물며 적극적인 고지에 의해서 자신의 지역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함을 알게 되었을 때 상당수의 지역주민들은 그 범죄자가 살고 있는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공공안전을 위한 신뢰감의 공유 등의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또 해체된 지역사회로 인식하고서 효율적인 사회통제를 잘 하지 못한다. 공공안전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도 주민마다 다르며, 비공식적인 사회통제의 기대를 공유하는 정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Navarro & Rabe-Hemp, 2014; Pope, 2008; Socia & Stamatel, 2012).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불이익

성범죄자들이 사회해체지역으로 몰려 살면서 범죄 재발방지 효과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주민들도 불안한 생활을 하는 등 불이익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에 의하면, 거주지 제한정책 때문에 그들의 1/3정도는 강제로 주거지를 옮긴 경험이 있었으며, 1/2정도는 지역사회의 압력이나 재정 문제 때문에 억지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많은 성범죄자들이 적절한 거주지를 찾지 못하며, 수감되기 전에 살았던 곳보다 더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해체된 동네에 해당되었다. 폐가를 비롯하여 폐차, 쓰레기, 잡초들이 무성한 거리나 공터 등의 환경에다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취약계층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었는데, 주거가 부정인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일상적인 범죄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그와 같이 성범죄자들이 사회적 해체가 심한 지역에 밀집해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거주지 제한정책에 의해 다른 곳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우선 출소 직후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에 임대료가 더 싼 주거 공간을 찾기 때문이었다(Mustaine, 2014; Snow 등, 2015).

성범죄자들이 해체된 지역에 몰리더라도 모두 익명으로 살아갈 수 경우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더 높아지며, 사회적 지지나 재원을 얻기가 힘들어진다. 즉 그와 같은 지역에서의 거주는 범죄 피해의 대상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아동을 상대로 한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그 아동들이 범죄자들에게 매우 취약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California주 Fresno군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이 해체된 지역에서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거주하는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보다 범행 가능성이 더 높았다. 물론 그와 같은 범죄 가능성도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범죄 위험이 감소하게 되었다(Snow 등, 2015).

등록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해체된 지역에서 살고 싶은지를 살핀 연구는 많지 않지만, Florida주 및 Kentucky주의 자료를 참고할 때 사회적으로 더 해체된 지역일수록 성범죄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보다도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성범죄자들이 더 많이 거주했다. 성범죄자들이 그와 같은 해체된 지역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익명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익명성이 재범을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등록된 범죄자들이 거주하는 해체된 지역은 사회적 통제가 훨씬 덜 이루어지고 있었다(Navarro & Rabe-Hemp, 2014; Socia & Stamatel, 2012).

거주지 제한 등으로 성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해체된 지역으로 몰리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해체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주민들은 성범죄자들과 함께 살게 되면 자신들의 지역이 해체

된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면서 불안해한다.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의하면, 등록된 성범죄자가 한명이라도 사는 곳은 다른 범죄자도 그곳으로 와서 살도록 유도하므로 나중에는 그 지역이 성범죄자들의 밀집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성범죄자들에 관련된 정보를 고지해주는 것 자체가 성범죄 위험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버린다. 또 성범죄자들이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의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 때문에 공포감이 매우 심한 편이다. 범죄자들의 거주지로부터 가깝게 살면 살수록 범죄자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공포감은 더 심하다.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성범죄자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하고 살아가야 하므로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들에 비해서 더 쉽게 피해자가 된다.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입장에서서는 단순히 이웃에 사는 자들을 범죄의 목표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자신들이 범죄자임을 알려지는 순간부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분노로 발전하다보니 재범의 가능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Mustaine, 2014; Navarro & Rabe-Hemp, 2014; Pope, 2008; Socia, 2012a; Tewksbury, 2014).

실제로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도심이든지 시골지역이든지 재정적인 손실도 보게 되는데,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가 근처에 거주한다면 그 손실이 더 컸다.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알 경우 지역사회주민들이 입는 재정적인 손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주택가격의 하락이다.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곧바로 하락하게 되는데, 그와 반대로 그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버리면 다시 가격이 즉각 오르게 된다. Ohio주 Montgomery군의 주택 가격 정보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동네의 집값이 하락하지만, 흉악범 수준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하락폭이 더 컸다. Illinois주의 McLeon군의 2012년도 말에서 2013년도 말의 조사에서도 그

러한 주택가격의 변동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또 그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책들의 효과는 논쟁 거리가 되고 있다(Larsen, Lowrey, & Coleman, 2003; Navarro & Rabe-Hemp, 2014; Pope, 2008).

논의 및 제언

성범죄자들의 상습성 문제가 매스컴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킬 때마다 정치적인 요소나 국민들의 감정적인 요소 등이 개입되어 강경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정책들이 효과적이라면, 정책의 시행과 함께 성범죄로 체포된 자 및 상습 성범죄가 확연히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정책들이 성범죄 재발감소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반면, 지역사회주민들의 불안을 높여주고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범죄와 관련된 정책들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강경한 방향으로만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지역사회에 고지하고 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거주지 제한정책의 배경은 성범죄자들의 상습성을 감소시켜주는 것이어서 여러 지역에서 유행처럼 시행되고 있지만, 거주지 제한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재범감소의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대신에 오히려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결과(교육, 취업, 치료 서비스, 사회적지지 서비스 제한 등)가 나타나서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다수 연구자들은 현재 상태의 거주지 제한정책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나 범죄의 상습성 상승, 재활 불가능, 성범죄자의 범죄 특성이 유사함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믿음은 범죄사건이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될 때마다 언급되는 정보의 주요 내용이다. 또 정책 입안자들은 그

러한 법률을 파기시키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Burchfield 등, 2014; Huebner 등, 2014; Mustaine, 2014; Snow 등, 2015).

성범죄 예방, 성범죄자 관리 및 통제 등은 실증적인 근거로 해야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거나 기존의 방안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 성범죄 관련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재범이나 상습성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미래의 잠재적인 가해자 및 피해자 발생의 예방에까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으로서 그 목표가 재범 방지 및 초범 발생의 예방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범죄자들이 출소하기 전부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특별한 치료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은 출소하기 전부터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출소 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어야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출소하기 전부터 치료나 개입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자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범죄자에게는 매우 효과적이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실제로 치료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성범죄자들의 재범 비율이 받지 않은 자들보다 더 낮은 편이다(Grossman, Martis, & Fichtner, 1999; Hanson & Morton-Bourgon, 2004; Kus, 2014; Levenson & Hern, 2007).

또 그들을 위한 치료나 개입방법 및 내용도 재범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약물치료(예, 화학적 거세)에만 의존하는 방법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약물치료는 성적 자극에 대한 신체적 상태의 각성(흥분, arousal)을 감소시켜줄 수는 있지만, 정신적 상태의 각성 수준을 감소시켜주지는 못하므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하고는 관련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성적인 자극을 받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흥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능력이 신장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허용된 또는 적절한 상황에서는 흥분하는 것을

증진시키는 반면, 변태적인 또는 부적절한 상황에서는 흥분을 감소시키는 조절을 의미한다. 곧 범죄자의 정확한 평가에 의해 인지행동치료만을 해도 치료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약물치료만을 했을 경우에는 범죄의 상승성 위험을 경감시키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인지행동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Butts, 2014; Grossman 등, 1999; Kus, 2014).

그렇다면 인지행동치료에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그들의 재범을 방지할 때 효과적인가? 강간이나 기아증과 같은 범죄행위를 변태성욕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성범죄를 미국정신의학회의 DSM에서 달리 분리되지 않은 변태성욕(paraphilia not otherwise specified) 편에 포함시켜 해석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한 논란과 상관없이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최소화 ① 친밀감 결핍, ② 왜곡된 성 의식, ③ 정서 조절능력의 결핍, 및 ④ 인지적 왜곡의 네 요소로 정리하고 있는데, 치료프로그램에서도 그 네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대인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될 수 있으며 또 사회적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함양시켜줄 수 있다. 역시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하된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인간존중 및 평등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김인숙, 2014; Hanson & Morton-Bourgon, 2004; Kus, 2014).

물론 그러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치료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치료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출소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반복해주는 것이 좋다. 또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소도 치료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데, 출소 이전이라도 치료프로그램의 참여는 입소한 시설기관 자체보다도 치료기관을 방문한 상태라면 더 효과적이다(Grossman 등, 1999). 출소한 이후에도 치료프로그램이 제공되

는 장소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거주지를 제한정책은 성범죄자들의 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거가 부정확하면 일거리를 구하거나 지지도 받는 일도 어렵지만,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소가 너무 멀어서, 찾아가기가 어려워 결국 그들의 정신건강 치료에 악영향이 크다. 범죄자들이 아동들에게 항상 접근 대상이므로 그들이 지닌 위협을 치료를 통해서 감소시켜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거주지가 확실한 범죄자보다도 주거지를 임시로 정해져 있거나 아예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의 범죄자의 치료가 더 어렵다(Butts, 2014; Nobles 등, 2012).

둘째, 지역사회와의 지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앞에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들이 대부분 너무 강경해서 그들에게 위협적이며, 그로 인하여 공공안전에 오히려 부적인 결과가 초래됨을 지적했다. 거주지 제한정책은 성범죄자들에게 사회적 오명을 벗기 힘들게 해주므로 성범죄자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장애가 되는 정책, 즉 지역사회주민들이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반대하도록 해버리는 정책이 되기도 한다(Levenson, D'Amora, & Hern, 2007; Noble 등, 2012; Tewksbury, 2015).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안정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재범의 의지가 낮아질 수 있는가? 바로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의지가 낮아진다. Colorado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지지 속에서 살아간 성범죄자들이 지지가 없거나 배격을 당한 범죄자들보다 상승성이 더 낮고 규칙 위반 횟수도 더 낮았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가족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등 지역사회와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자들의 상승성 비율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 비해 훨씬 더 낮았다.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감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의 통합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Levenson & Hern, 2007).

셋째, 출소 전후로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더라도 성범죄자들의 상승성을 근절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그들의 행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아동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주지 제한정책이다. 또 거주지 제한을 할 때 법안에 저녁 무렵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집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추가사항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미 그 거주지 제한정책이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음을 지적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거주지 제한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주거부정의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도 생겨나면서 사법당국에서 그들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Butts, 2014).

그러나 그들이 학교나 놀이터 등에 접근하는지의 여부는 GPS전자장치에 의한 추적만으로 쉽게 알 수 있으며, 그들이 장기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행방의 추적이 더 용이해진다. 그들의 행방 추적이 GPS장치에 의해서도 효과가 나타난다면, 굳이 거주지 제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 또 거주지 제한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일자리 제공은 지역사회 지지의 효과는 물론 감시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Butts, 2014; Hanson & Morton-Bourgon, 2004; Levenson & Hern, 2007).

넷째, 앞에서 논한 세 가지 사항은 이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상습성 감소를 위한 방안이 해당되지만, 성폭력을 원천적으로 근절시켜주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인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즉 장기적인 안목에서 초범의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면접결과와 담화분석(discourse analysis)에 의하면, 그들의 4정도가 어린 시절 다양한 형태의 폭력 피해 및 정서적 결핍과 관련되었다(Abbiati 등, 2014). 아동기 학대와 성범죄 상습성에 관한 연구들은 전형적으로 아동기 성 학대의 피해를 당한 남성들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가해자가 되더라도 상습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Dietrich, Smiley, & Frederick, 2007; Jespersen, Lalumière, & Seto, 2009). 일반적으로 약물 중독의 부모, 투옥된 부모, 미혼

부모 등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아동의 경우 나중에 일상적인 범죄의 위험이 높은 반면, 아동기에 성 학대나 정서적 결핍,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경험한 자들이 성인기에 성범죄로 체포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Levenson & Socia, 2015).

이런 맥락에서 성범죄 문제의 해결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은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보다 더 강경한 해결책이 나와야만 성범죄 문제가 더 분명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 실시된 정책들은 거주지 제한정책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현재 강경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최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앞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방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래사회의 잠재적인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아동이 양육되고 있는 기간 동안 학대 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이다. 역시 아동기 학대 피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조기 개입으로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가 아동보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인숙 (2014).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응용 사례. *대한성학회지*, 1, 19-28.
- Abbiati, M., Mezzo, B., Waeny-Desponds, J., Minervini, J., Mormont, C., & Gravier, B. (2014).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experienced and subsequent offenses through discourse analysis. *Victims & Offender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based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9 (2), 234-254.
- Burchfield, B., Sample, L., & Lytle, R. (2014). Public interest in sex offenders: A perpetual panic? *Criminology, Criminal Justice Law & Society*, 13 (3), 96-117.

- Butts, S. (2014). Sex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s serve no purpose. *GGU (Golden Gate University) Law Review Blog*. Paper 15. http://digitalcommons.law.ggu.edu/ggu_law_review_blog/15.
- Casady, T. (2009). A police chief's viewpoint: Geographic aspects of sex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0, 16-20.
- Cohen, L., & Felson, M. (1978).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Duwe, G., Donnay, W., & Tewksbury, R. (2008). Does residential proximity matter? A geographic analysis of sex offense recidivism. *Criminal Justice & Behavior*, 35, 484-504.
- Dietrich, A., Smiley, W., & Frederick, C. (2007). The roles of childhood maltreatment and psychopathy in sexual recidivism of treated sex offender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4 (3), 19-31.
- Grossman, L., Martis, B., & Fichtner, C. (1999). Are sex offenders treatable? A research overview. *Psychiatric Services*, 50 (3), 349-361.
- Hanson, R., & Morton-Bourgon, K. (2004). *Predictors of sexual recidivism: An updated meta-analysis* (Cat. No.: PS3-1/2004-2). Ottawa, Canada: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 Hanson, K., & Morton-Bourgon, K. (2005). The characteristics of persistent sexual offenders: A meta-analysis of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 (6), 1154-1163.
- Huebner, B., Kras, K., Rydberg, J., Bynum, T., Grommon, E., & Pleggenkuhle, B. (2014). The effect and implications of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Evidence from a two-state evaluation. *Criminology & Public Policy*, 13, 139-168.
- Jespersion, A., Lalumière, M., & Seto, M. (2009). Sexual abuse history among adult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A meta-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33 (3), 179-192.
- Kus, E.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offender legislation and psychosocial factors*. Dissertation, The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UMI 3637159)
- Levenson, J., Brannon, Y., Fortney, T., & Barker, J. (2007). Public perceptions about sex offenders and community protection policie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7, 1-25.
- Levenson, J., D'Amora, D., & Hern, A. (2007). Megan's law and its impact on community re-entry for sex offender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5 (4), 587-602.
- Levenson, J., & Hern, A. (2007).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Unintended consequences and community reentry. *Justice Research and Policy*, 9 (1), 59-74.
- Levenson, J., & Socia, K. (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rrest patterns in a sample of sexual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doi: 10.1177/088626051550751
- Mustaine, E. (2014). Sex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s: Successful integration or exclusion? *American Journal of Criminology*, 13 (1), 169-177.
- Navarro, J., & Rabe-Hemp, C. (2014). Location, location, location, the impact of registered sex offenders on home sale prices: A case study of McLeon County, Illinois. *Graduate Research - Criminal Justice* (Illinois State University: Research

- and eData, Paper 3). <http://ir.library.illinoisstate.edu/grcj/3>
- Nobles, M., Levenson, J., & Youstin, T. (2012). Effectiveness of residence restrictions in preventing sex offense recidivism. *Crime & Delinquency*, 58 (4), 491-513.
- Pope, J. (2008). Fear of crime and housing prices: Household reactions to sex offender registr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4 (3), 601-614.
- Rengert, G., Piquero, A., & Jones, P. (1999). Distance decay reexamined. *Criminology*, 37 (2), 427-446.
- Singleton, D. (2006). Sex offender residency statutes and the culture of fear: The case for more meaningful rational bases of fear-driven public safety laws.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3 (3), 600-628.
- Snow, D., Kikuch, G., & Kissner, J. (2015). A multilevel analysis of registered sex offender violation status: The role of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social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ology and Sociology*, 4, 1-15.
- Socia, K. (2012a). Residence restrictions and the association with registered sex offender clustering.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4 (4), 441-472.
- Socia, K. (2012b). The efficacy of county-level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in New York. *Crime & Delinquency*, 58 (4), 612-642.
- Socia, K. M. (2012c). The implementation of county residence restrictions in New York.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8 (2), 206-230.
- Socia, K. (2015). State residence restrictions and forcible rape rates: A multi state quasi-experimental analysis of UCR data.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27 (2), 205-227.
- Socia, K., & Stamatel, J. (2012).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the social control of registered sex offenders. *Crime & Delinquency*, 58 (4), 565-587.
- Tewksbury, R. (2014). Evidence of ineffectiveness: Advancing the argument against sex offender residence restrictions. *Criminology & Public Policy*, 13, 135-138.
- Youstin, T., & Nobles, M. (2009). Residency restrictions: A geospatial analysis of sex offender movement over time. *Crime Mapping: A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1, 55-76.
- Zandbergen, P., Levenson, J., & Hart, T. (2010). Residential proximity to schools and daycares: An empirical analysis of sex offense recidivis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 (5), 482-502.